

26896
 접수처: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 접수일시: 2016. 08. 18. 16:34
 마감일: 2016. 08. 19. 10:00
 처리과: 기동부
 접수번호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| | | | |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제출인 | 상호(대표자) : 남강환경개발 | 사업자등록번호(노동부등록번호) 제 3145 호 | | |
| |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로 229번길 1(판문동,3층 3호) (전화번호: 055-753-0133) | | | |
| 건축물 | 건물명 진교초등학교 |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41 | | |
| | 연면적(㎡) 9061.40 | 작업기간 2016. 08. 10 | | |
| | 석면건축자재 [길이(m) · 면적(㎡) · 부피(㎡)] 5696.99㎡ (필요 시 별지 첨부) | | | |
| 측정기관 | 대표자 황정환 | 사업자등록번호 127-86-24859 | | |
| |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(신일동,904호) | | | |
| 측정 일시 | 2016년 08월 10일 | | | 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 결과(f/cc) | 검출 석면 |
| | 첨부 | | | |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첨부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6 년 08 월 10일

제출인 남강환경개발



경상남도 하동군청

귀하

| | | |
|------|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|-----------|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 공기중 석면농도측정

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조 사 명: | 진교초등학교교실천장석면 해체 공사 비산농도 측정 |
| 주 소: |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41 진교초등학교 |
| 측정일시: | 2016년 08월 10일 |
| 의 퇴 자: | 남강환경개발 |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위치 및 결과

| 측정 결과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|
| 측정 일시 | 2016년 08월 10일 | | | | 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| 측정 지점 | 측정 결과(f/cc) | 검출 석면 | |
| | #1 | 폐기물보관소 1 | 0.0035764 | 검출 미만 | |
| | #2 | 폐기물보관소 2 | 0.0011167 | 검출 미만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

| | | |
|------|--|-------|
| | | 측정 위치 |
| 첨부서류 |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| |
| | 수수료 없 음 | |

(주)이에스 연구소

우 500-7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4-39 테크노시티 9층 904호

전화: 042-935-0748 / FAX: 042-934-1748 / E-mail : www.esins.co.kr@gmail.com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뢰기관 | : 남강환경개발 | 시료 받은 일시 | : 2016. 08. 10 |
| Tel | : 042-935-0748 | 분석 일 | : 2016. 08. 10 |
| Fax | : 042-934-1748 | 보고서 작성일 | : 2016. 08. 10 |
| 제 목 | : 진교초등학교교실천장석면 해체 공사 비산농도 측정 | | |

위상차 현미경법을 이용한 정량 분석 결과입니다.

| 시료번호 | | 채취위치 | 총 유량 | | | 측정결과 | 검출석면 |
|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Sample No. | | Location | Liter | Min | L/min | f/cc | 0.01 f/cc |
| 1 | #1 | 폐기물보관소 1 | 411.4 | 34 | 12.1 | 0.0035764 | 기준 미만 |
| 2 | #2 | 폐기물보관소 2 | 439.2 | 36 | 12.2 | 0.0011167 | 기준 미만 |
| 3 | | | | | | | |
| 4 | | | | | | | |
| 5 | | | | | | | |
| 6 | | | | | | | |
| 7 | | | | | | | |
| 8 | | | | | | | |
| 9 | | | | | | | |

분석자

황정환



* 이 분석결과는 건축자재의 성분 증명 및 법적인 소송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.

* 본 시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결과 발송 후 30일 후에 폐기처분 됩니다.

위상차 현미경(PCM)은 석면 함유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므로 석면 함유 여부 판단이 필요한 시료의 경우 투과전자현미경(TEM)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또한 위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보고서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, 무단 복사를 수정을 금합니다.

【석면조사기관지정서】

세2014-120004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| | |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기관명 | (주)이에스연구소 | |
| 소재지 | (306-230)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(신일동, 테크노시티) 904호() | |
| 대표자성명 | 황정환 | |
| 지정사항 | 총 대행(지정) 한 계 |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 |
| | 관할 지역 대행(지정) 한 계 |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 |
| | 대행(지정) 지역 | 전국 |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시청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4. 8. 19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

